

『구미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7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7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7월 23일

제1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

나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직종을 통합·단순화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하위법령 제·개정('13. 12. 12. 시행)에 따라 직종개편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여비 부담 수령시 가산징수의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 (안 제4조의2)
- 「지방공무원법」 개정(직종개편)에 따라 관련문구 수정(안 제5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하게 여비를 수령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됨에 따라 가산 징수의 필요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, 지방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합·간소화하는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하위법령 제·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